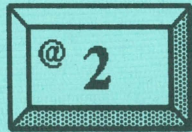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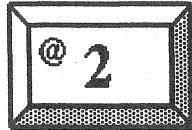

지방자치시대 여성



1 기 전 국 여 대 생 대 표 자 협 의 회

지방자치시대 여성



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순서



0 들어가며 1

1 김영삼정권 평가 1

1.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1

2. 사건으로 본 김영삼 정권의 실상 7

2 지자체선거를 맞이한 여성정책 18



0 들어가며....

김영삼정권은 선거 당시 많은 여성정책을 가지고 여성들의 표를 겨냥하였다. 하지만 현재 김영삼정권의 여성정책 실현도는 극히 미약하며 공허한 선거공약만 난발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정책에 대한 반짝쏘뿐만 아니라 김영삼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역대 군부 정권이 할 수 없었던 일까지 과감하게 저질렀고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공안 정국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김영삼정권의 이제까지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더이상 김영삼정권에게, 민자당에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김영삼을 심판하여야 한다.

또한 김영삼 정권의 여성정책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여성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정도가 많이 미흡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정책들을 각각의 후보들에게 견인해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정책을 정리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금 나온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여대협에서 한 목소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 김영삼정권 평가

1.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1. 김영삼 정부의 여성관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정책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즉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여성 정책이라 한다. 그리고 정책의 평가는 정책 내용 자체를 포함하여 정치 행정 체계 내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선 김영삼 정부가 행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가를 알아보는 여성정책평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관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운동 내에서 합의되고 ILO,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여성정책이 기반해야 되는 여성관의 핵심적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 둘째는 여성이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나 이를 기분으로 여성을 자녀양육자이며 가사담당자로 역할 규정하여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점, 셋째 남녀는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

업은 법제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 민자당의 대선공약, 제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개발부문 계획,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 보사부, 교육부, 정무장관(2)실등의 '93년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을 토대로 정부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1년 실적을 노동, 성, 교육, 정치, 가족, 복지영역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기반한 여성관이 전통적 가부장적 원칙 속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일차적 위치는 가정내에 있고, 남편에 의해 대표되며,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이다. 따라서 여성은 생계 의존자이며, 혹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생계보조자일 뿐 생계 책임자는 아니다.

두번째 특성은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점과 정책의 후진성이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던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에는 문민정부로서의 어떠한 특성도 나타나 있지 않다.

2. 여성노동정책

앞서 이야기한 첫번째 시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이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동의 책임을 혼자 지면서 직업 활동을 양립하도록 할 수 있는가'로 잡힐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의 생존을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의지케하며 필요에 따라 어떻게 효과적인 저임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로 바뀌어 질 수 있다. 가족의 책임으로 떠 넘겨질 수 있는 노동력이 여성 노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은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을 보았을 때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임시직 계약직, 축락직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파견 근무등이 늘어나 여성 고용 불안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는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정규직처럼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편리한 시간, 장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제정하려는 고용보험법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상당부분이 제외되어(우선 적용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실업시의 책임이 가정내 남자에게로 밀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한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가족내 남성에게 의해 여성의 생계가 보장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성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가사노동과 병행하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정책

성 정책에서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관철되고 있다. (1993년 12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부 공약 중 드물게 지켜진 성폭력특별법 제정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고 있다. 즉 성폭력의 개념 문제에서 피해 여성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을 상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는 전근대적이고 성 차별적인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친고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4촌 이내의 친족간과 장애인에 대한 추행 이외에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성문화에서 볼 때 제 삼자의 신고는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과 불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묵인되며 피해 당사자인 여성에게 죄책감과 '순결을 잃은 여성'이라는 자기 인식을 더 강화해 줄뿐이다.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의견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현이다. 공약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 운영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약 실현도 미약한 상태이다.

4. 양성평등 교육 정책

교육정책에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진행되기 보다 오히려 가부장적 사고의 틀 내에 머물고 있다.

남녀평등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약속들이 많았으나 실제로 집행된 사업내용은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1992년 현재 국민학교 여교사 비율은 52.7%, 중학교 48.3%, 고등학교 21.8%, 고등교육기관 20.1%인데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여성교육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교직의 여성화를 막는다는 목표로 93년도 11개 교육대학에서 남학생을 25-30% 모집 의무화함으로써 여학생의 모집 비율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전국 교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사 중 관리직 비율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시정되어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성평등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교육계 자체가 교육주체, 교육과정, 교과서등에서 여전히 가부장적 내용을 전수하고 있다.

대선 때 내건 공약에는 '교과과정의 성차별 내용 삭제,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평등의식 교육교재 개발 보급, 여성의 능력 개발 위한 진로지도 강화' 등의 정책적 내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93년 실시한 정책을 보면 '교육과정에 남녀 평등의식제고'라는 식의 추상적 내용만 두,세가지 있을 뿐이다.

5. 가족 여성복지 정책

한국가족은 여전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담당자이다. 호주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남계에 의한 가계 계승을 이상화시키고 있으며 가족내 여성의 가사노동은 제대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세대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상속세를 부인이 남편의 재산(사실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공동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납부하게 되며(상속세 공제액 1억원+결혼년수/1천만원)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한 점은 지난 1년간 업적 중의 하나이다.

여성복지 개념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립된 개념이다.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국제적 흐름은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여성문제 해결이나 전반적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인 급여로부터 모든 여성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로 하는 보편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빈곤과 성차별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 여성 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인정되기는커녕 요보호 여성에 대한 시혜적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법(현재 5인 이상 사업장만 당연 적용 대상), 의료보험법(부양자 인정 기준에서의 남녀차별)에서도 여성은 차별 받고 있으며 여성은 생계유지자인 남편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가정(假定)들이 이 차별들의 실상을 은폐하고 있다.

남녀 성별 역할 분업론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분야가 여성복지 정책 분야이다. 여성의 모성역할은 강조될 뿐 보호되고 있지 않다. 산전후 관리에 대한 본인 부담, 출산 비용에 대한 일부 본인 부담, 짧은 산전산후 휴가(현재 60일, ILO가 정한 세계적 최소수준은 12주, 정부는 90일로 산전후 휴가를 늘리는 방안을 무급 생리휴가제를 관철시키면서 조정중), 보육시설의 절대부족(93년 현재 정부는 100개소의 보육시설 설치,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45개소), 노후보육시설 확대유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973-> 1506개소, 생보자 의료부조자 자녀 11000명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등 여성정책 분야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탁아시설의 아동수는 보육대상 아동의 13%에 불과하다) 등이 여성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학교 급식도 예정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1993년 11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추진위원회 조직, 97년 말까지 국민학교 급식 전면 실시 예정이나 '93년 현재 농어촌 지역, 도시벽지 지역에도 학교급식이 전면화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

1993년 제시되었던 선거 공약을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근본적 개혁 의지나 방안이

없다. 종전까지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일 뿐이다. 예컨대 고용기회, 복지, 법과 제도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의 기본구조를 제고하고 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정책 관련 기구로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과 정부부처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고위정책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하고 각급 의회의 여성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참여의 비율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 기본문제는 여성계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있다. 즉 여성을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고안하는 대신에 특혜차원의 기용이나 또는 막연히 여성의 비율을 늘이겠다는 정도의 미온적인 입장이라 하겠다.

한편 당내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를 대폭 늘인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당내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93년에 이러한 부족한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천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선거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묵살된 상태에서 12월에 와서야 기존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여성분야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위원의 수를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늘렸다. 당연직 위원으로 내무, 법무, 교육, 문화, 노동부 장관 외에 통일원, 외무, 농림수산부 장관이 새로이 참여하는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장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 여성정책 담당수석비서관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을 일부 조정하였다.(94년 4월 현재 여성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경우를 위해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이나 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나 조사 연구를 의뢰하고 기타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기존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가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심의, 조정하는 기능만을 가질 뿐 정책실현에 있어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여성정책을 총체적으로 입안하고 조정하고 집행하고 통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낙후한 국가군에 속하는 한국 여성의 지위를(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1.3%,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53%)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려는 정책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

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의 정무제2장관실의 사업목표와 실적을 보면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워 남녀고용평등 정책을 위한 활동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부여 제도화 ▶전업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정 내의 성 차별적 의식 전환 추진(부모 의식 전환, 언론 매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법 개정추진 등을 추진한 것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각 부서의 업무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는 미지수이다. 우선 정무장관실의 기능 중 정책 실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둘째는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노동부와 보사부를 제외하고는 전담부서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부처들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업무가 상호 상충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각부처 내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다. 정무제2장관실의 예산은 1993년 약9억원으로 전체 행정부 예산의 0.005%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부에서 여성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녀소년과의 '93년도 사업비 예산은 총 45억 3천만원으로 전체 노동부 사업비 예산의 0.26%에 불과하다. 또한 그간에 각 부처에서 추진되어 온 여성관련 업무 중에는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일반적 성격의 사업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 체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회의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후진성을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부문은 여성정치 분야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는 한국 여성의 지위중에서도 가장 낙후한 부분이다. 1988년 UN자료에 의하면 세계 134개국 중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10위에 머물고 있다. 여성 각료는 새정부 출범시 3명으로 장관급 46명중 6.6%였으나 현재는 2명으로 4.3%로 줄었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용이 권장되는 방식은 적극적 조치이다.(UN여성차별 철폐협약)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조치, 우선대우, 할당제 목표설정 등이 적극적 조치에 포함되며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할당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대만까지)

그런데도 정부는 '95년의 지방의회 선거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내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대해서도 할당제 실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성을 낮은 지위에 묶어 두고 여성의 사회적 노동과 가사 노동을 싼 값으로 활용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통해 비민주적 사회를 지속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7.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시기 민자당의 대선 공약, 제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개발부문계획, 그리고 여성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 보사부, 교육부, 정무장관

(2)실등의 노동, 성, 교육, 정치, 가족, 복지영역에서의 실적등을 분석해 보면서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해 보았다.

만약 정부가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선 한국의 여성에 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가부장적 여성관이 아니라 평등한 여성관에 입각하여 여성 노동, 성, 가족, 교육, 복지,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따로따로,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새롭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개편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또 한국의 정치 조직 체계와 문화를 고려해서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 전담의 중앙기구는 특히 법률 제안권 및 행정 입법권, 관련부처에 있어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감독권등의 실질적 권한과 장기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재원 내부조직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 가부처에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반드시 신설, 강화되어야하며, 또한 지방 행정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95년 선거시기를 맞아 이러한 여성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줄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진출을 장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채택하는 일이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진출이 극히 저조한 현실은 바로 한국에서 여성의 비정치화 전통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깨는 방법은 당분간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일정 비율의 여성이 반드시 각 의회에 포함되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여성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반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사건으로 본 김영삼정권의 실상

문민정부의 화려한 탈을 쓰고 지난 2열전 출범을 했던 김영삼정권, 그렇게 외쳐대던 '개혁'의 당찬 목소리는 '개혁'의 야비한 몸짓으로 민중들의 목을 조르고 신한국, 세계화 이데올로기는 2년을 통해 신한국, 세계화의 정부로 확연히 드러났다.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부정, 부패, 비리정권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물에서 지하에서 온갖 대형사고들이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고 하늘마저 저버려 땅마저 목말라했던 정권이요, 시대착오적인 매카시바람에 또다시 간첩단 조작사건, 온갖 온갖 조작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만능 고리로 무고한 민중들을 움아매었던 정권, 정권의 비리는 술술 제껴두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아 버리는 폭력정권이요, 제것도 못챙기면서 달라는 대로 간도 쓸개도 다빼내주는 세계화로 약진하는 굴욕정권, 제나라 주둔하는 외국군대에게 주둔비커녕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놀 곳 다주고 국민이 맞아도, 죽어도 별소리 못하는 무능정권, 유린된 제나라 여성들의 정당한 배상도 요구할 줄 모르는 사대매국정권이요, 온갖 엽기적이고 정신분열증적인 사건, 잔인

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가득한 민생치안에 관심없는 정권...이루 말할 수 없는 정권이 바로 문민정권이라 하는 김영삼정권인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상기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것 하나 F학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정권 2년의 실상을 돌아보자.

① 부정, 부패, 비리정권

94년 인천직할시 북구청의 세금 횡령비리 이후 부천, 부산등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제히 붓물처럼 터진 세무비리는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정권의 문민의 탈을 한꺼풀 벗겼다.

지난해 인천직할시 북구청을 시작으로 불거져 나온 지방세 횡령액은 인천북구청이 79억원, 부천시가 31억원이었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 결과를 보면 지방세 횡령등의 세금비리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횡령사건은 감사를 실시한 2백59개 기관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92개 기관에서 저질러졌고 그 규모는 40억7천만 원이었으며, 유용사건은 39개 기관에서 94억여원이 유용되었다. 또한 위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백55개 기관에서 2백89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

또 세금비리의 유형이 다양하여 영수증 금액을 바꾸거나 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고 또는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세금횡령을 하였다. 또 징수한 세금을 유용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소홀히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빠뜨리거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비과세 처리한 것들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세무비리 등 부정비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그 이유이겠지만 상사나 하급자 또는 동료들의 부정비리를 목격하고도 묵인하도록 되어있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기소가 되어도 최하위 공무원, 공모자들만 기소되고 진정 책임져야 할 얼굴은 기소자 명단에 보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들키면 최고 사직서'라는 배짱도 두둑하다. 구태의연한 사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도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말로만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외쳐대는 정권, 아랫물이 이렇게 흐린데 윗물은 과연 맑을까?

김영삼 정권의 비리는 이러한 세금비리 뿐만 아니다.

94년 10월 인천 올림포스슬롯머신업체 뇌물사건, 동아건설뇌물사건등 온갖 비리로 툭툭 뭉쳐진 정권이다.



②사고공화국

'세계화' 운운하며 온 국민을 다그치던 김영삼대통령에게 가스 폭발사고로 실려 가는 한 사람이 "목숨이나 살게 해주소, 예?" 하고 역설하는 장면의 그림이 인상적이다.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능력과 수준을 상징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옛날에 나라에 재난이 많이 생기면 나라님이 덕이 없다고들 했지만 그런 심증적인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소홀한 민생치안,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국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나라님은 총체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잘되면 문민 덕, 못되면 이전 정권 탓' 하는 김영삼정권의 무능함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잃게 했는지를 일련에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을 보면서 되짚어 보자.

#93년 3월

부산 구포역 부근 열차 전복, 78명 사망, 163명 부상

#93년 4월

논산 정신병원 화재, 34명 사망

#93년 7월

목포 아시아나 항공추락, 66명 사망, 44명 부상

#93년 10월

근산 앞바다 페리호 침몰, 292명 사망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서울시내 한복판의 큰 다리가 잘린 두부토막처럼 풀썩 내려앉았다. 등교길 어린 학생들, 출근길 시민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다. 1백년도 견뎌야 할 다리가 그런 꼴로 15년만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건설해 온 이른바 부실공사, 시멘트 적게 넣고, 자재를 빼먹고, 감시 감독도 적당히 눈감아주고 그 틈새를 뒤통으로 메우는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가 저질러 놓은 사고이다.

어느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사고나 천재지변도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붕괴 가능성을 경고해왔고 방송사에서도 심각성을 고발해왔기에 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94년 10월

충북 단양군 적성읍 충주호 유람선 화재, 29명 사망, 33명 부상

불법운항을 알고도 허가내어준 무분별한 관행으로, 성수대교 붕괴 삼일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이다.

#94년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 12명 사망, 3백 50여명의 이재민 발생

대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는 엄청난 후유증으로 충격을 안겨줬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수칙무시 ▶누장 구조 ▶관리 감독 허술 따위의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공식화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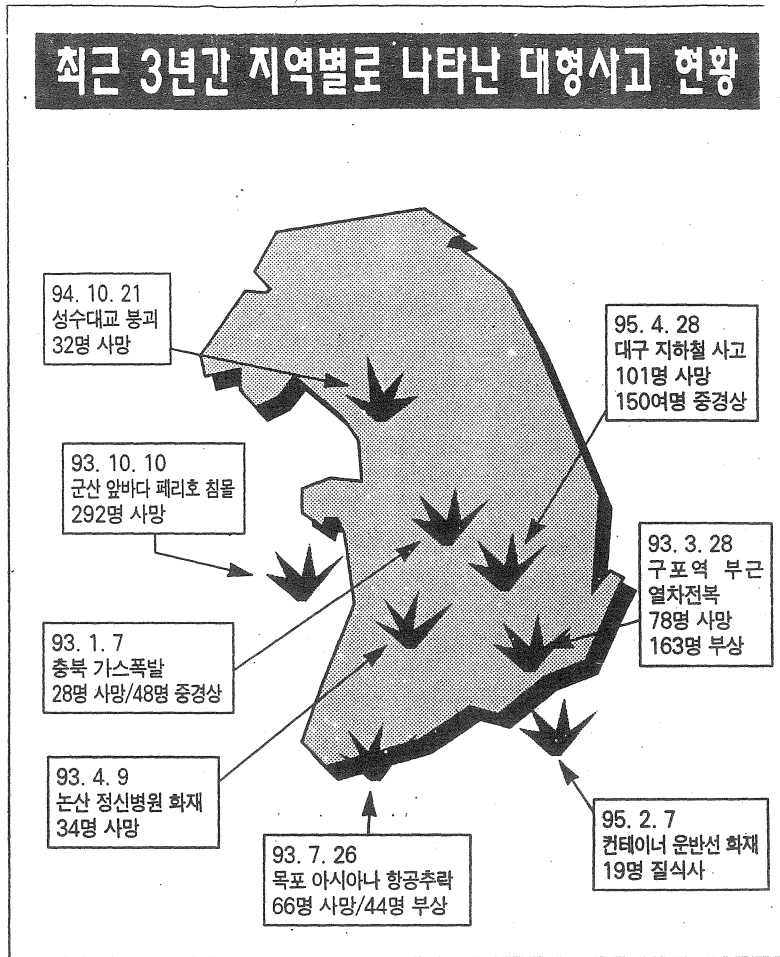
#95년 4월

대구 달서구 가스폭발, 101명 사망, 200여명 중경상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있는 지 몇개월 되지 않아 다시 일어난 대형 가스폭발사고. 사고 현장은 전쟁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다리, 철로, 가스, 원전, 건설현장, 공장 등 중요한 안전시설에 위험진단이 나와도 대형사고가 터질 때까지는 안일한 태도로 버티고,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 한가지 분

야에서만 법석을 떠는 구태의연하고 황폐화된 의식구조 속에서 개혁은 결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③민생치안 무능정권

김영삼정권 집권기간 동안 참으로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이례적인 장기적인 가뭄까지 겹치면서 ‘하늘마저 외면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다. 그것과 함께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사건, 성폭행, 보복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러한 범죄에만 대비책 없이 완전히 노출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은 국민을 경악하게 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자.

#94년 9월 지존파사건

치밀하고 담대한 범행도구와 시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은 잔인하고 섬뜩했다.

#94년 9월 은보현사건

연이어 훔친 택시로 여자 승객만 6명을 납치하여 2명을 살해하고 강도, 강간등을 서슴지 않아 온 국민을 불안에 넣었다.

#94년 5월 박한상사건

한약상 부부 피살사건으로 부모를 죽인 반인륜적 범죄였다.

#95년 김성복사건

유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교수
결손가정, 가정의 해체라는 총체적인 가정문제를 보여주었다.

#94년 10월 여중고 성폭행사건

성폭행 사건이 계속 있어왔으나 피해사실을 숨겨와 밝혀진 뒤에 피해자는 연이어 나타났다.

#95년 계속되는 가정폭력

94년 김부남씨 사건, 이형자씨 사건, 양에리양 사건등 가정폭력으로 빚어진 많은 사건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8년 동안 어머니를 폭행해온 아버지를 죽인 17세 전군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법과 피해자의 보호시설등 대책이 시급하다.

그 밖에도 증인보호대책이 없는 가운데 증인 보복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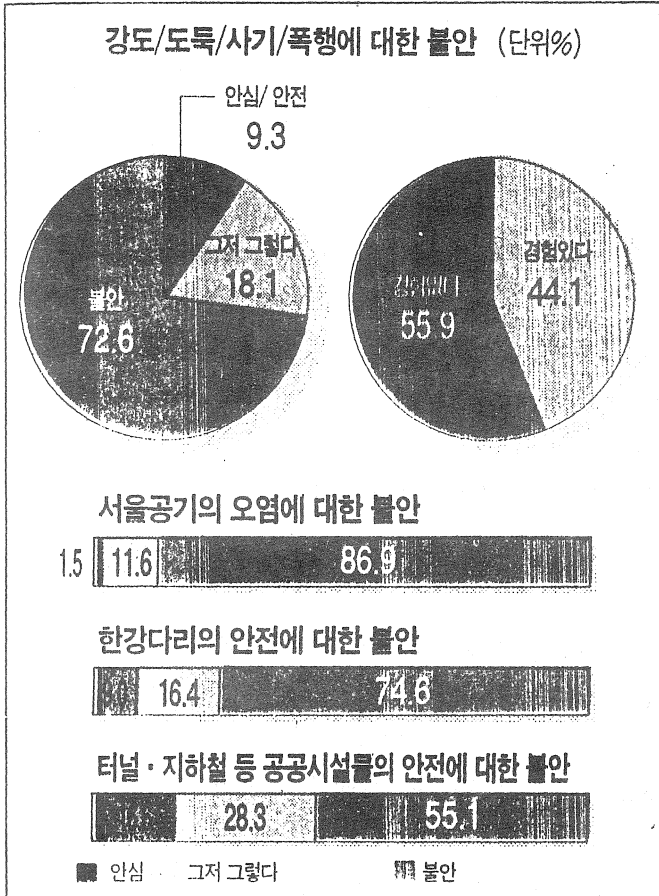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 전체 살인사건의 20%를 넘나드는 현실도 인명 경시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지존과의 “돈많은 자들을 저주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이나 ‘야타족’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기에는 어렵도 없는 일이지만, 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만든 잘못된 교육제도, 극심한 빈부격차, 부정과 비리를 통한 부의 축적등 온갖 사회제도적 모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기대했던 문민정부의 민주개혁정책에 대한 김영삼정권의 배신, 도덕성 상실 정권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해사건, 강도, 강간, 성폭력, 가정폭력등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집권층의 부정부패고리의 단절과 올바른 개혁의 모습속에서부터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민생치안에 소홀한 김영삼 정권의 무능함 속에서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사건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엄중

한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

↓ 서울 시민 87% “떠나고 싶다”



④ 공안정권, 폭력정권

이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민생과 치안을 돌보는 데에는 무능하면서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진보지식인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라는 굴레로 옴아매고, 특하면 국민의 눈길을 딴 데로 물기 위해 벌이는 조작사건 행각은 여전히 있어왔다.

#94년 2월말까지 문민정권 하에서 139인 국보법으로 구속

문민시대 인권이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는 계속 늘었다. “국보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인권소지의 침해를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발언이 꾀변이라는 사실은 기간의 국보법 적용 사례를 보면 드러난다.

민중의 삶을 노래한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구속
남매 간첩단 조작사건- 김은주, 김삼석 남매

#94년 8월 유례없는 매카시 선동, 그치지 않고 붙었던 '공안 회오리'

조문파동 이후 박흥 총장의 꿍이질 않는 주사파 발언으로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마녀사냥' 열풍이 전국에 불어닥쳤다. 특히 '긴급구속, 강제연행 합법화장치'로 불법연행을 마구 자행하였고, 공안정국에 편승하여 대학내에 무차별수색을 펼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대학 강의자료까지 이적성을 들먹이며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조선공업전문대, 목포대, 부산대 등 무차별 압수수색 헬기까지 동원한 범민족대회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 범민족대회 참가 뒤 귀가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자행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정현백(41, 여, 성균관 사학)교수, 김홍진(56, 숭실대 독문학)교수 독일 유학때 해외 간첩단 연계혐의로 연행, 무혐의로 석방

유초하(46, 철학)교수, 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사건으로 수배, 조사뒤 석방

#95년 자주대오 조작사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실정을 무마하기위해 또한 번의 용공 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지난 2월 부산대 '자주대오'조직 조작사건을 시발로 경기대, 고려대 등 한총련 전체를 용공조직으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학생회 출신자들까지 때아닌 구속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결국 무리한 조작사건은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공안 조작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불신을 안겼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94년 6월 야간근로, 불규칙 교대 등 일제시대 근무체계인 변형근로제 아래 고통을 받으며 저임금을 강요받았던 철도 노동자들의 변형근로제 철폐와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정부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았다. 경찰력 투입, 파업주동자 사전구속영장 발부 및 수배, 해고, 징계..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은 이 투쟁으로 구속 30명, 해고 55명, 기타 징계 800여명, 부당전출 140여명의 인적 피해를 입었다. 퇴직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고, 적극 지지했던 노동자들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산간오지로 강제 전출을 당했다. 지하철 노조 또한 6월 투쟁으로 사전구속영장 18명, 해고 63명, 직위해제 61명, 중징계 127명 등의 인적 피해를 기

록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요구했던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가 깡그리 무시되고 노조가 공권력에 의해 거의 파괴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언제나 공권력의 이름으로 강경대처해 온 김영삼 폭력 정권은 다시 95년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대탄압을 자행했다. 소박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국가전복'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일색했다. 국민 생활 복지 무시한 민영화, 재벌특혜 반대, 통신개방 반대, 3%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노조활동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한 한통노조에 대한 탄압은 군사독재도 넘지않고 지켜온 '성역'까지 남입하면서 진행되었다. 명동성당, 조계사등 종교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군사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폭거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성역없는 법집행'은 이러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12.12사태 주범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군사반란자라고 규정을 내리면서도 기소유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다리를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은 방향감각 없는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⑤ 굴욕정권, 사대매국정권

노동자, 농민, 학생,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하게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김영삼정권은 정작 강경하게 대처해야하는 대외 정책에서는 모두 내어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사대매국 정권이며, 주둔비 한푼 못받으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 모두를 상전 모시듯 내어주고, 그들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도 제대로 법집행하지 못하는 굴욕정권이며, 제 나라 여인들이 치욕의 역사속에서 밝혔던 인권도 제대로 배상받지못하는 반민족적 정권이다.

#줄건 다 주고 제소당한 쫓대없는 통상정책

93년 말부터 시작된 UR수입개방 반대투쟁은 전국민적 관심속에서 청년학생과 600만 농민의 힘으로 'WTO(국제무역기구)이행특별법'과 '농정개혁 7대 과제'라는 두가지 성과물을 남겼다. 그러나 WTO이행특별법 속에 규정을 두고자 했던 WTO협정의 국회비준 절차를 저지하는데는 실패하여 수입개방을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에 상관없이 WTO협정 속에서 154개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시작으로 이 땅에 외국농산물이 판을 치게 되었다.

WTO체제 출범이후로 다시 한번 한국 '주권'의 지위에 의문부호를 찍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상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 오렌지의 통관 지연의 이유로 검역절차를 들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제소를 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은 무시하고 무조건 제도부터 변경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회사의 통신기기 입찰문제 또한 보복이 두려워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선통관, 후형식검사'나 '선통관, 후검사'와 같은 양보는 주권 그 자체의 훼손이며 국민의 생명을 거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통상에서 김영삼정권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도, 정책도, 과학적 대안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결과를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무능정권이다.

#민족의 아픔 외면하는 정권

민족 수난의 역사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유린되는 것은 언제나 여성이었다. 정신대 또한 일제 식민치하에서 벌어진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민족 유린, 인권 유린이었다. 13-18세의 어린소녀 10-20만 명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제연행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군인들의 성노예가 되어야 했고 폭행과 구타가 잇따르는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 범죄성인정과 전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배상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국민모금을 하여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때만 되면 일본의 한국지배가 평화적이었느니 하는 망언과 함께 군국주의의 부활 음모가 시시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리 정부는 정신대 할머니의 생계는 물론 대일 외교에서의 정당한 배상도 요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외교행태를 보여 반민족적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우리 정신대 할머니, 김영삼정권이 이러한 민족적 아픔을 외면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군범죄의 면죄부, 민족주권을 팔아 넘긴 한미행정협정

95년 5월 지하철 층무로 역에서 술취한 미군 13명이 한국여성을 성추행하고 그들을 탈리던 한국청년 조정국(28)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항의하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이러한 미군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2년 동두천에서 미군병사가 윤금이라는 처녀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되어온 고질병이었다. 1945년 미군이 주둔한 이후 연평균 2000여건, 하루 평균 5건씩 줄잡아 10만건이 넘는 미군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처벌이 불과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나토 52%, 일본 32%, 필리핀 21%에 달하고 있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에 와서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에 불과하다. '예비수사권'마저 포기하는 한국경찰의 굴욕적인 자세가 미군범죄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 협정에 있다.

1.한국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재판권 행사의 권리는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본협정 22조 3항, 합의의사록 22조 2항)

2.미군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수사할 수가 없고 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되어야만 한국정부가 비로소 한국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다.(본협정 22조 5항)

3.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복역중인 미군도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신병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본협정 22조 7항)

4.한국정부는 미군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 공무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미군당국이 제시하는 공무증명서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죄도 미군당국이 우기면 처벌할 수가 없다.(양해사항 22조 3항)

5.미군들은 미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한국법원의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국경찰의 미군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미국정부 대표의 입회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합의의사록 9항)

정부는 잇따르는 비난여론에 밀려 한미행협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여태껏 한미행협을 방치한 점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을 볼 때 지자체 선거를 앞둔 '여론 무마용'의 성격이 짙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김영삼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한미행협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개정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므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조정국씨 폭행사건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범죄 사건만해도 벌써 10건이 넘고있다. 한미행협은 반드시 전면개정되어야 할것이다.

지자체 선거를 맞이한 여성정책

- 지방자치단체 내에 여성정책 심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각 지역에서부터 성폭력 규제강화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상담소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지역에서부터의 정책마련과 피해자보호시설을 군 단위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상담가를 배치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을 지역에서부터 규제해 들어가고, 지방공무원 채용시 각급 공무원중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 지역문화의 꽃이라할 수 있는 올바른 대학가 문화를 위해 향락, 퇴폐문화 척결운동을 지역에서 벌여내어야 한다.

2 지자체 선거를 맞이한 여성정책

1. 지방자치단체내 여성정책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사회에는 우리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성에 기인한 사회구조적 차별의 장애가 더 심각하므로 여성문제와 관련한 지방행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제 발전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방의 정책결정시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발전과 삶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감독권을 갖고 일할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지방자치단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차원에서 여성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기구로는 요보호여성의 부녀복지 담당부서가 주부서이고 근로여성과 관련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사업, 농촌여성과 관련한 농촌지도소사업, 여성교육과 관련해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전담부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복지분야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취업인구의 47.3%(94년)이상이 여성이며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여성취업이 증가하면서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안정, 직장과 가정의 조화, 여성의 정치참여증진, 양성평등의 성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여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차원에서도 여성문제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 타정책과 연결성을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이므로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여러부서와 연관된 다면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의 권한을 갖고 여성정책과제에 적합한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는 조직구조이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전담부서의 형태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할 '평등지위담당관'을 임명하면 모든 행정영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각 지역에서부터 성폭력 규제강화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소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3위이며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강간사건만도 무려 32만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인여성의 94%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위험을 느끼면 살고 있고 실제로 76.4%의 여성이 가벼운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7.7%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사회전반의 풍토가 성 상품화와 성폭력범죄의 온상지가 되어 감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인신매매, 강도강간,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 직장내 성희롱 등의 양상으로 다양화되고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3.12.17 국회를 마지막 통과하여 제정된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1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계에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위원회를 발족시켜 제정운동을 벌여 온지 약3년만의 일이다.

아직도 여성의 권리는 정조권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특수강간죄 친족강간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등에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많은 은폐된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을 위한 법정형만을 강화하였을 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명목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정작 형사절차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피해자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적이고 형식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 법의 미비점은 별첨자료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는 형사처벌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우선 피해자가 마음놓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상담하여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소와 상담은 동시에 피해자 조사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피해자 인권의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판단이 결합되어 형사처벌에 필요한 본격적인 절차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담당할 성폭력 전담 특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별첨)

3. 남녀고용평등법을 현실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를 이루어 내고 여성의 평등한 평생노동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의 73.7%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이라고 하는 임금수준! 같은 근무년수의 남성동료들의 승진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승진, 승급시험에서 여성은 아예 제외되어버리기 일쑤여서 여성의 지위는 언제나 말단 사원.

“직장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시기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는 종착역에 다가섰다는 식으로 25세 조기정년제가 군말없이 적용되거나, 잦은 부서 이동과 지방발령으로 강제사직을 종용하는 엄연한 풍토.

기업의 부동산투기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수출경쟁력에 뒤진다는 이유로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폐업시키거나, “가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이 기막힌 사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은 87년 대통령 선거는 앞두고 여성유권자를 향한 미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각 여성단체들이 법 개정운동을 벌여 89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였다.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5조가 남녀균등처우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법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평법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출산보호규정과 수유시간규정을 보완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가능하게 한 점에 있어서 그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7)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제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임금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6조의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ㄹ)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제8조)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제11조)

사업주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제60조)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은 시행 후 지금까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간 여성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른바 법전의 평등은 있어도 노동현장의 평등은 없는 공허한 이념뿐 이었다.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단계에서 정부는 대국민홍보활동의 강화는 물론,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엄격하고 철저한 법집행의지를 보이는 적극적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를 가로막는 '군복무 가산점'에 대하여 (별첨 자료)

4.가정폭력에 사회적인 대책의 마련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989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57.5%의 남자들이 배우자를 때린 일이 있다고 하며, 한국여성의전화 94년 상담통계중(6858건) 구타상담(2126건)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은 가정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살인으로 결말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제 더이상 가정폭력의 문제는 부부간의 물베기 싸움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이며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내구타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폭행을 학습한 남편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경제제도 속에서 구조적으로 유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가진 여성이나 특별히 재수가 없는 여성들만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경험하게 될는지 모르는 보편적인 여성문제 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정부는 얼마나 각인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아내 구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나."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야간, 상습폭행, 협박, 손괴를 규정하고 있는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남편이 칼, 흉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상습폭행 적용시에서도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타 남편의 전과기록을 요구하고 있어 전과가 없는 경우 구타남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렵다.

"남편의 구타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민법 친족법 840조 3항의 규정은 구타당하는 여성을 돕는 유일한 범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경제적 자립문제, 자녀양육문제,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증거자료 제시(진단서등)의 어려움 때문에 재판이혼을 요청해도 판사가 이혼의 사유로 보지 않아 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피해 여성들의 위한 긴급피난처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다. 긴급피난처에서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 구타관련법(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아내구타도 일반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내 구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내 구타를 가정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5. 학교 앞 거리를 정화하고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대학의 얼굴인 대학로. 80년대 초반해도 낭만과 젊은이의 열정과 고뇌가 흘러 넘치던 대학로가 이제는 유흥가의 밀집체로서 심각한 문화적 퇴행을 불러 일으켜 각 대학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다운 대학, 대학로다운 대학로는 과연 더이상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인가?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선두에서 자정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 대학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 간부는 ‘학교앞 상가를 실제 규제할 만한 법적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인지’라고 말한다.

현행법상 학교앞 향락 문화를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앞 정화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100m를 정하여 이 구역에는 규정된 유흥업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 구역은 절대 구역보다 규정 대상이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 대상이 적고(술집, 락카페의 경우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규정된 업소가 있어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편의점과 같이 실제 문제가 되고 잇는 곳(현재 편의점은 슈퍼라기 보다는 술집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하루종일 영업을 하므로 외부 사람은 물론 취객들을 꼬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에 대한 규제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기존의 법으로는 학교앞 문화를 개선해 낼 수 없으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미성년자 단속, 영업시간 규제, 음란물 취급 불허 등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퇴폐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 시민들의 개선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어 진다.

대학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주변이 본연의 모습을 찾고 교육환경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학교환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그린 벨트화하여 유흥시설이 지정구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대학의 경우 대학이 공원화 된 곳도 많다.

이 특별법은 학교밖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교통사고률이 높은 경우처럼 학내의 교

조항에서 나타는 성폭력특별법의 미비점

1. '정조'와 '성적자기결정권'

형법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죄등 성폭력범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정조권이 더이상 보호 법익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조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순결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개념이다. 정조라는 것이 성별에 차별없는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볼 때 형법 32장 규정은 '반헌법'적인 개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문자 그대로 정조에 부합되게 해석하고 있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형법32장 규정은 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단계의 비동의 성 중에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의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것, 그리고 강간도 피해자의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한다는 것은 다지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성을 침해하였다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만으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없고 '정조'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한 여성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이 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의 흐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즉, 보호법익을 침해한 행위 그 자체 보다 피해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부여한 순결과 정조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규정 및 규정의 해석에 있어 정조라는 개념이 뿌리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992.7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으나, 규정 형식은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강간죄에 대한 해석의 태도는 멀리 법제도 법문화의 변화를 기대하라고 하면서 변경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는 정조권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다. 헌법과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과 '정조'로 크게 불합치하고 있다. 그 원인이 소위 '성의 이중기준 윤리'라는 법문화라고 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일치시켜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비동의 간음죄

성폭력 범죄는 이제 '피해자의 대응'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관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 이동된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 행위의 차별성을 더해 가면서 다단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최초로 처벌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부딪히는 문제가 비동의간음죄이다.

이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일단 범죄행위 선상에 올려놓아야 하고 그 양형은 차후문제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간음을 한 자는 일단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고 강요된 성행위를 당한 자는 이를 고소하여도 무고죄로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부부간

아동에게나 부부간의 가정폭력 행사뒤에 폭행 남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극도의 비상시적 행위의 절정이 바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강요이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 긴장이 쌓이는 단계, 학대사건 발생단계, 화해단계, 다시 긴장이 쌓이는 단계라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예측으로 길들여진 부인은 화해 단계에서 요구되는 강제적인 성에 무방비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 협박을 당한 부인이 이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앞선 폭행과 성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강간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의 강압적인 심리 상태를 구태여 입증할 필요 없이 평소 자행된 가정폭력이 있고 강간이 주장되는 당시에 가정폭력이 있었음이 입증되어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여성 부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별도의 죄명으로 처벌해야 한다.

4. 근친자 간

별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을 행하면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근친간간등 비정상적인 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주거에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현실에서 ‘친족’에 인척도 포함되는거라는 법률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굳이 ‘연장’의 친족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나이’나 아니면 ‘연하’의 가해자의 경우에 처벌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법률의 흠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5. 직장내 성추행 및 기타 성적접근

“업무상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형법에서는 간음만을 규정하던 것을 추행에 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업무상 권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접근을 의미하는 이른바 Sexual harassment(성희롱)과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추행이 희롱보다는 강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례가 ‘추행’을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고 있음에 비추어 추행에 언어적, 시각적 방법을 제외한 신체적 접촉에 의한 대부분의 성적 접근이 포함되리라

본다.

그러나 '업무상 고용 보호감독'이라는 제한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현재 거래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에 준하는 계약 관계에서 형성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잘 사실상 구속 관계에 있는 동렬 직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를 이용한 추행은 배제될 염려가 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지하철 등 공동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수사 목적이외에는 통신등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발산지를 알려주는 서비스 등 제도가 마련되고 공동밀집 장소의 성적 접근의 가이드라인의 제시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제법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책

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석방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받게 하였다. 보호관찰제도의 성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호감호가 치료처분의 성격보다는 단순히 가혹한 형의 연장이라는 제도로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범죄자의 자발적인 기질의 개조를 특히 필요로 하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겠는가 의문이다.

그래서 형벌 및 보안처분을 다양화하여야 개별적인 제법 및 상습 범죄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으나 규정되지 않았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 성기를 절단하는 거세형을 도입하는 것도 제기되었다. 거세형은 신체형으로서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한 과중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등 자유형이나 보호감호에 갈음하여 범죄자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과할 수 있는 제도로써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성추행죄를 성폭력범죄가 일정한 지위나 자력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행해진 경우 자격정지형을 병과할 필요성이 크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의 수용시설에 성폭력교화원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범죄자의 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차후의 문제로 넘겨졌다. 또한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되거나 형 집행중에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 처분에 병행하여 성폭력피해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 또는 그곳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증을 필하도록 하는 제도가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성폭력 교화원의 설치는 정부의 예산상 조

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봉사활동, 교육등 제도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직은 기대할 만하다.

8. 친고죄의 존재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등 법정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범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어찌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덮어두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발상은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은폐된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신고나 고소하지 않는 것이 수치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도 친고죄로서 기본 성격은 유지한 채, 특수강간죄 친족강간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하였고 다만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다.

성폭력 범죄는 이제 더이상 여성의 정조나 순결에 흠을 내는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이다. 범죄 행위를 처벌하여야 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성폭력 범죄에도 예외일 수 없다. 다른 범죄와 달리 친고죄라는 제한 형식을 존치시켜 국가가 처벌 의무 이행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행위를 무법지대로 방치할 때 국가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 유지 기제로서 성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친고죄에 부수되는 고소기간에 의하여 피해자는 헌법상 고소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고죄의 성질상 고소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

친고죄를 존치하자는 견해도 과폭한 강간등죄등은 비친고죄로 하자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경한 죄일수록 명예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고소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이미 고소기간을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보호

성폭력 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보호는 친고죄 존치를 통한 고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에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권을 명시하여 그 보호에 만전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나 피해여성이 고소하기를 꺼려하는 원인 중에서 경찰서에서 당하는 수모와 잘못하면 무고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피해여성은 고소인 보충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경찰 앞에서 수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실한 질문에 의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물며 피해여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피해 정황을 재현하라는 무리한 요구에는 더욱더 치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를 준당사자적인 지위로 보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편안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를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효된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비밀보장이라는 극히 선언적인 측면의 규정을 두었을 뿐이다.

10. 국가기관 민간단체가 병존하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광범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업무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소는 국공립병원, 보건소에 대하여 성폭력치료등 의료제공 요청권을 부여 받았다. 민간단체에게 상담소 설립 운영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자원봉사 및 오로지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경비 보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하한 기부금도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성폭력 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기부금 모집을 이를 허용함으로써 비용자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상담소 업무에서 필요한 준수 사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만이 있을 뿐 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반대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로부터 예상되는 민형사상 공격에 대한 보호제도는 전무한 것이 흠이다. 다만 본 장은 제도보장적인 조항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관련 사항을 보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는대로 그 보완점은 차후에 거론하기로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 제도

1.제도 현황

<근거>

국가 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개요>

내용

병역법 또는 군인 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가산점 부여(위 법률제701조)

가산점 적용 대상기관(취업보호 실시기관)(법률 제30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일상적으로 1일 16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년 이상 군필자의 경우 총점의 5%, 2년 미만의 군필자의 경우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군복무는 모든 국민에 봉사하는 일반적 공익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여성 응시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보상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올바른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94년 자료에 보면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 심의 자리에 제시한 자료는 정부가 여성공무원 증가 현상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대군인 가산제 관련 자료’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문건에서 총무처는 9급 시험에서 가산제를 없앨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의 37.9%에서 52.7%로 무려 14.8%나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뒤집어보면 현재의 가산제 때문에 9급 시험에서 평균 15%의 여성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통계로써 인정해준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계를 보는 총무처의 시각이다.

총무처는 “현재 상태로도 여성공무원이 너무 많이 주로 8.9급이 담당하는 출장, 단속, 현장업무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성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들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행정마비’ 박기 위해서는 9급에서 가산제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산제를 없애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3%에서 5.0%로 0.7%밖에 안 늘어나 ‘별 문제가 없는’ 7급의 경우만 현행 3~5%에서 1.5~2.5% 수준으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 야근이나 출장업무를 못해 남성공무원들이 골탕먹게 된다는

소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 시장에 이어 여성군수, 파출소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장, 현장지도감독을 못한다는 총무처의 전제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공공기관인 정부 마저 여성의 등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의식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60년대 군입대를 회피하는 경향이 심해지자 국방의무 확립과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군 자체의 민주적 개혁 없이 이런 사후적인 보상책으로 사기진작과 입대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더구나 여성들과 남성 군면제자의 취업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만약 지금의 가산제가 단순히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제도는 공개경쟁 원리에 위배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취업영역에 걸쳐 군복무에 관한 한 호봉책정에서 그 보상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껏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우너하든 원하지 않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했던 3년간의 노고를 다수가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평등의 원리를 놓고 따져보면 이 제도는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왜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느냐는 차원인데, 이 점에 관한 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남성들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 왔고,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일부 여성들 또한 억울하게 생각해 온 부분이다. 앞으로 안보개념과 기능이 변하여 국가안보가 더이상 군대조직만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분야에 걸쳐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적 복무와 관련되어 논의 될 또 하나의 주제는 국민양육에 대한 보상, 지원의 문제다. 국방과 훌륭한 국민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한 사회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른바 '근대국가'의 역사는 이 두 영역에 걸친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세 양육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쓰지 못하고 전적으로 개별가족에 맡겨져 왔다. 국가방어에 주력해온 데 비해, 2세 양육과 교육을 매우 소홀히해온 것인데 요즘 그 결과가 여러가지 끔찍한 사회문제로 터져나오고 있다.

열심히 준비를 해 취업전선에 끼어들었는데 공평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을 알게 된 이들은 쉽게 사회를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

교대와 음대에서 남학생을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정치인은 전체의 0.9%에 불과하고 세계 1백10위라는 최하위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여성정치를 배출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을 거론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산제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